

# 학교급식소위원회 규정

제정 (2017. 4. 01. 규정)

개정 (2019. 4. 12. 규정)

**제1조(목적)** 이규정은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 관한조례 제16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**임실동중학교** 학교운영위원회에 “학교급식소위원회”(이하 ‘위원회’라한다)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전라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·운영에 관한조례 제16조에 근거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학교급식 식재료 검수, 조리 과정 등 위생 점검 , 모니터활동
2. 학교급식 납품업체 방문 평가
3. 학교급식개선에 관한 활동
4.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(자문)함에 있어 실무전문위원회의 역할

## 제3조(구성)

1.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학교운영위원 정수로 한다.
2. 위원회의 위원 및 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한다.

**제4조(위원의 임기)**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동일하게 한다.

## 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

1.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2.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제6조(회의 등)** 회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로 같음한다.

**제7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한다.

**제8조(회의록 작성 등)** 학교급식 소위원회가 학교운영위원회와 통합 운영됨에 따라 서면 보고는 생략한다.

부칙      본 규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한다.